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61호
2023. 3. 27.(월)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8609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8610호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8611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861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8613호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정조례	11
제8614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8615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17
제8616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8617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8618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2
제8619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3
제8620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4
제8621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8622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8623호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8624호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28
제8625호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제8626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제8627호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제8628호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8629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8630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8631호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38
제8632호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41
제8633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8634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8635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제8636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8637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8638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8639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8640호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8641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8642호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6
제864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8644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제864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8646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제8647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8648호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제8649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8650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8651호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78
제8652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8653호	서울특별시 체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제8654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865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8656호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제8657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제8658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제8659호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8660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8661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8662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8663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제8664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8665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제8666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제8667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제8668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8669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8670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제867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제8672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제8673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5
제8674호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116
제867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제8676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8677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124
제8678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26
제8679호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1
제8680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35

◆ 공 고

제2023 - 885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137
--------------	-----------------------	-----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 - 9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9
제2023 - 91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3

자치법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9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권장업종(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권장업종시설(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건축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2. 권장업종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분양 목적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4.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해당 부동산이 최초로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취득일부터 1년(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항제2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은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입지 여건 조성 및 산업 집적 유인을 통해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수 IT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성수 IT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신설 (제6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610호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택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통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정책기획관” 을 “주택공급기획관, 교통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으로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제2항 중 “없는 때에는 그” 를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로, “없는 때에는 위원장” 을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조정하여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는 물류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이 맡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변경함(제3조제2항)

나. 당연직 위원 수를 8명에서 6명으로 축소함(제3조제3항)

- 당연직 위원에서 행정1부시장, 환경기획관, 정책기획관을 제외하고 경제일자리기획관을 추가

◆ 서울특별시조례 제8611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1,000만원” 을 “2,000만원”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4.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완성차업계 내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의 신규·이전 등록 및 계약금액 2,0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 체결 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의무 면제대상 “1,0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 으로 확대(안 제3조 제1항 제2호)
- 나.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매입의무 면제(제3조 제1항 제3호)
- 다. 비사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 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의무 한시적 면제(제3조 제1항 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61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한다.

제3조 중 “서울산업진흥원” 을 “서울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3년 단위” 를 “1년 단위” 로 한다.

제16조 중 “3월 말” 을 “2월 말”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울산업진흥원” 을 “서울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서울산업진흥원” 을 “서울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서울산업진흥원” 을 “서울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사목 중 “서울산업진흥원” 을 “서울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서울산업진흥원” 을 “서울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서울산업진흥원” 을 “서울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서울산업진흥원” 을 “서울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산업진흥원은 창업촉진, 중소기업 육성, 산업진흥 등 경제정책전반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명칭은 기관의 기능을 포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원의 연임기간 및 결산서 제출시기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2. 주요내용

- “서울산업진흥원” 의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 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경제 진흥 활성화와 기업성장 지원 명시(안 제1조 및 제3조)
- 임원의 연임기간을 “3년 단위” 에서 “1년 단위” 로 변경함(안 제7조)
- 결산시기를 3월 말에서 2월말로 변경함(안 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13호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제품디자인

나. 환경디자인

다. 시각·포장·정보디자인

라. 서비스·경험디자인

마.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디자인

사. 산업공예 디자인

아. 융합디자인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준하는 디자인행위와 결과물

2. “디자인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연구·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자문·활용 등을 하는 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3. “디자인 전문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기업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자인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자인산업진흥 기본방향과 목표
 2. 디자인산업진흥의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3. 디자인산업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디자인산업진흥 관련 법·제도 등의 개선
 5. 그 밖에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 등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을 진흥 및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디자인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
 2. 디자인산업 관련 창업·제작, 기술개발·제품화 등 지원
 3. 디자인산업 교육, 홍보 및 마케팅,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
 4. 디자인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5. 디자인전문회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디자인 관련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에 대한 자문
3.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4. 디자인산업 전람회, 전시회 개최, 포럼 등 행사 개최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디자인산업 개발사업 지원 및 정보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디자인산업 소관 실·본부·국장 및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디자인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디자인산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디자인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표창)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체계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목적 및 정책대상(제1조~제2조)
- 나. 디자인산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서울시 책무 부과(제3조)
- 다. 디자인산업 관련 지원사업 규정(제6조)
- 라. 디자인산업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제7조~제10조)
- 마.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제11조~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14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5명 이내(당연직 제외)”를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 또는 위촉하는”을 “위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차례”를 “1차례”로 한다.

1. 먹거리 분야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2. 먹거리 분야 기관, 협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먹거리 분야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제1항 중 “시장”을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를 “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이 직무를”을 “위원장 모두 직무를”로, “제27조에 따른 기획조정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장”을 “위원장 2명 중 1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고,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먹거리정책분과위원회 :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먹거리 보장 등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사업개발, 먹거리 통계 등에 관한 자문
2. 먹거리건강분과위원회 : 건강한 식생활·영양 실천 교육·홍보 및 활성화, 식문화 실천 사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항, 먹거리 정책 대시민 홍보활동

3. 먹거리환경분과위원회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자원화)실행을 위한 정책발굴 및 실천 방안 자문,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및 지원
제28조제3항 중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를 “분과위원장”으로, “15명”을 “10명”으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격월”을 “분기”로,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제26조, 제27조, 제28조”를 “제26조 및 제2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을 개편하며, 위원수를 적정화 하고 위원장 직급을 현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조문의 해석상 모호함을 방지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법적 용어로 정확하게 정비하며, 조문 간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체계 개편에 따른 위원수 축소 및 위원장 변경
 -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변경, 위촉위원의 요건 구체화 및 위원의 연임 횟수를 1차례로 축소(제23조)
 - 위원장을 시장에서 시민건강국장으로 변경(제24조)
- 나. 먹거리시민위원회 총 위원수에 부위원장 1명이 포함됨을 명시(제23조제1항)
- 다. 위원회 회의 횟수 변경(제26조)
 - 정기회의를 반기 1회 개최에서 연 1회 이상 개최로 변경
- 라. 제32조 제목에 사용된 용어를 법적 용어로 알맞게 정비(제32조)
- 마. 제33조 본문의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 조문을 삭제(제3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15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용·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에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일반시민들에게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약품이라는 인식이 미흡함에 따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제3조)
- 나.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제5조)
- 다.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명시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16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다.”를 “시장 등은 매년 공동사업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시장 등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 주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시장”을 “시장 등”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3. 사회주택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
4.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주거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주거관련 비영리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사회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임대관리 및 입주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사회주택 운영실태 평가 주체를 시장에서 시장·자치구청장·서울주택도시공사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주체의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주택 운영실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주택 관련 주요 안전 발생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그동안 상설로 운영되었던 사회주택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구성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주체를 ‘시장’에서 ‘시장 등’으로 변경함(제11조의2 제1항~제3항)
- 나. 조례 제11조의2에 사회주택 운영실태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 관련 규정을 신설함(제11조의2제1항)
- 다. 조례 제11조2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제11조의2제4항)
- 라. 비상설 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 임기, 회의 개최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상설위원회과 관련된 사항은 삭제함(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17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하여 공익광고에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는 현행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 등만을 규정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버스표판매대는 누락되어 있음.
- 따라서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도로점용허가 시설인 버스표판매대를 추가하여 공공시설물 간의 광고형평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버스표판매대를 추가함(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618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동 조례는 태양광 설비 관련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지원 등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의 규정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재정 지원,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친 서울시 사무가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근거 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8619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성 감소로 위원회 폐지 필요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8620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하여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사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증대하고자 제정('20.1.9.) 되었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도 시민참여 및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재정지원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서울시 사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8621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3: 위 표의 다목 중 ‘다중운집 행사’에는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 1] 중 다목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다중운집 행사”에 관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1. 비고 3 : 위 표의 다목 중 ‘다중운집 행사’에는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8622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는 다자녀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에 머물러 있어, 지원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3자녀→2자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제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623호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대하여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대한 상생협약 이행 여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상가임차인 권리보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대하여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624호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귀환한 참전용사로서의 명예를 향상하고, 억류 및 귀환 중 받은 고통을 치유하며 건강 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등록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포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등록포로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등록포로의 건강상태,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등록포로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용사의 명예를 향상하고, 등록포로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제1조) 및 정의(제2조)

나. 시장의 책무(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5조)

- 등록포로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라. 등록포로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제6조, 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25호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로 하고, 같은조제3호 중 “하는데”를 “하는 데”로 한다.

제3조 중 “필요한 시책을 강구”를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6조”로 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관광취약계층의 정의에 관광약자를 포함시키고, 관광 활동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 마련 의무의 내용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 마련 의무 내용을 추가보완함 (제3조).

나.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조문을 반영함(제4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626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소와 사업장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와 그 적용대상을 일치시킴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개정함(제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27호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비자기본법」 개정(2016.3.29.)으로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가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결혼이민자를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추가함(제2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28호**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제10조제1항 중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을 “1년에 두 차례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제2조).

나. 위원회 운영 횟수를 분기별로 한 차례(연 4회) 이상 개최에서 연 2회 이상 개최로 규정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29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폐치”를 “폐지”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 현황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을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로,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6월”을 “정비계획을 매년 3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시행 되는 다음 연도의 보고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1년 단위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성실성 담보를 위하여 1년 단위(위촉일로부터 기산)의 출석률이 50 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위촉 해제 사유로 신설함(제8조의2).

나. 회의 개최 통보시기를 7일 전에서 15일 전까지로 함(제10조제1항).

다. 운영 평가보고서 공개와 정비계획 및 전년도 정비실적 보고 절차를 구분하여 정비함(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30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자 선정 심의 외에 별다른 기능이 없으므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활용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31호**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자치구·유관기관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2. 자치구의 부구청장
3.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 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의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자치구와 경제 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위원회) 협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함(제2조·안 제3조).

-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개최를 규정함(제4조·안 제6조).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다. 의안의 제출을 규정함(제7조).

라. 안건의 배부와 의견의 청취를 규정함(제8조·제9조).

마. 실무위원회를 규정함(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32호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개선 또는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물환경 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2.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
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사업계획의 적절성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
2. 물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사업
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제1조)

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기준을 규정(제3조)

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제4조)

라. 민간단체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제5조)

마. 지원사업을 정당한 이유없이 중단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할 수 있음을 규정(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33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의 제목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을 “(서울특별시환경교육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은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제4항을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서울특별시환경교육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학교”를 “학교 등의 환경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을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과 협의하여”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조의2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학교환경교

육”을 “학교 등의 환경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8호) 중 “학교환경교육”을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으로 한다.

1.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담당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학교”를 각각 “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 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다른 세부”를 “다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유아 시기부터의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환경교육”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등”에 어린이집을 명확히 명시하여 영유아기부터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조의2(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교육” 및 “학교 등”에 관하여 정의함.
- 나. 조례 제6조의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을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으로 수정하고, 조례 전반에서 “학교”를 “학교 등”으로 수정함.
- 다. 그 밖에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본문 및 별지서식에서 이에 관한 인용 조문을 수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634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시장의 책무)” 를 “(시장 등의 책무)”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방해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적용범위)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장 등의 책무를 명시함(제3조 제3항).

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외의 것은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제3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635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전 세계적인 이상기온 및 재난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가하는 지역 축제를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 저감형, 온실가스 배출 저감형 축제로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의 지원을 받는 축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제16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636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이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사비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추가함(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37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10조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 도전적 행동 등으로 가족의 돌봄부담이 과중한 상황임. 이처럼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7조(지원 사업)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함(제7조제1항제5호의3 신설)
-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함(제10조제3항제11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638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① 관리자는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보도공사 시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도의 공사를 완료한 때는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1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639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능)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 를 “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 시장 “이라한다)” 을 “시장”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응급의료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함(제1조의2 신설)

나.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도록 함(제6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640호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지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여성기업 주간) 시장은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와 여성기업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여성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을 추가함(제9조).

나.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양 및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기업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을 명시함(제9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641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말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외 지역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용자에 한하고, 취약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보조 및 용자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는 재해 및 안전에 취약한 거주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저층주거지 취약 거주시설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 약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약 시설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침수, 화재 등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수리 지원 범위를 서울시 전역의 취약 거주시설로 확대하고, 취약 거주시설의 집수리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취약 거주시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제3조).
- 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의 취약 거주시설에도 보조 및 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42호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형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설치는 그 대형공사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할 때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방식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대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대형공사의 안전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 주민피해 방지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그 대형공사와 관련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그 대형공사의 사업 주관부서와 설계 또는 공사 발주부서의 담당서기관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그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해당 자치구회의회의원
4. 서울특별시의회 또는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해당 자치구 주민대표
5. 그 대형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은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의 임기는 대형공사의 실시설계 준공일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에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열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그 대형공사의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 공사중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형공사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및 설치시기를 규정함(안 제3조)
- 협의회 기능인 협의·조정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규정하고 임기를 명시함(안 제5조)
- 협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함(안 제6조)
- 시장으로 하여금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협의회 회의주기, 의결방법 등 회의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협의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4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8.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9.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지정·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1. “동물복지지원센터”란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이” 를 “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4조제4항” 을 “법 제4조제3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5조제1항” 을 “법 제51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41조” 를 “법 제90조” 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을 “명예동물보호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조교수이상” 을 “조교수 이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 을 “법 제16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유자는” 을 “소유자등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제7조의2제2항 중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제4항” 을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로 한다.

제7조의3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제8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 을 “법 제3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4항” 을 “법 제36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을 “명예동물보호관”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7항” 을 “법 제36조제4항”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제3항 단서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를 “시행령 제5조”로, “동물보호법 제41조”를 “법 제90조”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를 “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관리중”을 “보호·관리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3호”를 “법 제8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21조 또는 제22조”를 “법 제45조 또는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를 “법 제45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제17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3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시행령 제5조”를 “시행령 제5조”로, “법 제21조”를 “법 제4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를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조치”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4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29조”를 “법 제5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조제4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를 “법 제86조”로,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을 “소유자등 및 다음”으로,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을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5조”를 “법 제94조”로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제23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5조” 를 “법 제35조”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2조” 를 “법 제46조” 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시행령 제5조” 를 각각 “시행령 제5조” 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33조의2” 를 “법 제71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3조의3” 을 “법 제71조제3항”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662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유자등’, ‘맹견’, ‘반려동물’ 등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나.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제7조)
- 다. 맹견 소유자의 보험의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의2)
- 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의3)
- 마. 동물보호센터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바.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 사. 동물의 분양·기증, 인도적 처리를 규정하는 용어를 수정함(제17조)
- 아. 출입 및 검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의 범위를 규정함(제22조)
- 자. 위원회의 존속기한 삭제(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44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시장” 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 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시숲의 거시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제14조).

나. 자구수정(제6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4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4>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제28조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정기준
1. 도로,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따른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5.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6. 시장의 필요에 따라 타 기관과 협약하여 수행하는 실증사업에 따른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7.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8

※ 비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계산 예 >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2. 제5호 및 제6호의 산정기준 적용 기간은 점용을 위한 설비 등의 설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최대 3년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7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 실증설비 설치 등에 따른 하수도점용료를 서울시 자체 방침으로 면제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물산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하수도점용료 감면기준 및 산정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점용의 경우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의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4 제5호).
- 나. 서울특별시장이 필요에 따라 타 기관과 협력하여 물재생센터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점용의 경우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의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4 제6호).
- 다. 별표4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점용료 감면 산정기준을 최초 3년은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100분의 8로 함(별표4 비고2).

◆ 서울특별시조례 제8646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0조제1호가목 중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를 “18세 이하인 자(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 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장애인복지법」” 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18세 이하인 자(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 운영사항 중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 과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에서 ‘18세 이하인 자’ 와 ‘65세 이상인 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의 감면을 적용하여, 어린이·청년 및 노약자 등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8세 이하인 자’ 를 ‘18세 이하인 자(제7조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변경하여 감면기준을 명확히 함(제10조제1호가목)
- 나.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 과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를 신설함(제10조제1호가목, 제10조제2호가목).
- 다.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에 ‘18세 이하인 자(제7조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 를 신설함(제10조제2호나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8647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초고층 건축물등” 을 “제3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이하 “초고층 건축물등”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재난위치를 인지하고 신속·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로 높은 수직거리로 인한 화재 전파와 연소에 대한 취약성, 지상으로부터의 피난 거리 증가로 인한 피난의 어려움, 소방대원의 화재지점 접근 곤란성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사다리차 등 소방 장비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력 대피가 중요하고 기존의 수동적인 안내유도에 비해 신기술을 이용한 안내유도시스템을 이용하면 대피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
-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대피경로를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자에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48호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

- ①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 지하 시설물(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등)에 폭우 등에 대비한 안전 시설물(차수관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규정을 체계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층구조 지하보행로에만 적용하는 침수방지 규정을 삭제함(제10조제7호 삭제).

나.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침수방지를 위한 물막이판을 필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 설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르도록 함(제11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649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을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로 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적경제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제3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적경제계정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1호” 를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 로 한다.

③ 사회적경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시로부터의 전입금
-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 3. 융자금 회수, 차입금, 예수금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회적경제계정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3.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정”으로 한다.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3. 사회적경제계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가. 융자계정 : 소상공인담당관
- 나. 투자계정 : 경제정책과장
- 다. 사회적경제계정 : 공정경제담당관

3. 기금출납원

- 가. 융자계정 :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
- 나. 투자계정 :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
- 다. 사회적경제계정 : 사회적경제기업 담당사무관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융자계정 : 소상공인담당관
2. 투자계정 : 경제정책과장
3. 사회적경제계정 : 공정경제담당관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사회적경제 전문가,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및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제11조 및” 을 “제11조, 제11조의2,” 로 한다.

제19조 중 “제11조 또는” 을 “제11조, 제11조의2,”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자산·채권 및 채무 등 권리의무와 2022년 결산잉여금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사회적경제계정에 승계된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의 사회적경제계정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22회계연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는 사회투자기금 운용과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금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2022년부터 수행기관 공모요건에 ‘채권이행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증서제출’ 을 추가했으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응모 기관이 없어 용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웠음.
- 이에 사회투자기금의 운용방식을 수행기관을 활용한 채용자 방식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투자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라 근거 법률을 변경함(제1조).
- 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7호).
- 다.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함(제3조의3).
- 라. 사회적경제계정 신설에 따른 기금조성, 용도, 관리공무원, 운용심의회 구성 규정을 마련함(제4조부터 제9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8650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한다.

제2조제3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마목(현행 라목)의 “노인”을 “사람”으로 한다.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사립 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아래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학교·전문도서관 등 그 밖의 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를 따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식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지식정보격차 해소 등 독서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자료제작·구입, 시설개선, 기기구입 등을 위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2(이재민) 제3호 가목, 나목, 제4호 가목에 따른 재난 이재민의 심리회복을 위한 도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상실·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
2.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
3.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의 동거 가족
- ⑤ 제1항과 2항에 따른 도서지원 시 이재민 도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도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15조"를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고 이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의 부합도
2.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④ 시장은 다음 연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수립 시 제3항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호 중 “공공도서관” 을 “그 밖의 공공도서관” 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기관 및 자치구(이하 “설립자”)는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설립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요구·운영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취소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 제목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을 “(공공도서관 등의 운영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을 “공공도서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작은도서관” 을 “학교도서관” 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평가하고” 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로 한다.

제3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범 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및 개념을 정비함(제2조 및 제2조의2).

나.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지원 내용을 제1장 총칙에 신설함(제4조의2).

다.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신설함(제5조제2항부터 제4항).

라. 공공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이 포함되므로,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대상을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 명시함(제28조제3호).

마.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 등 관리의무를 신설함(제30조의2).

바. 시장의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및 평가 계획수립 의무를 명시함(제3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51호**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재지킴이”란 서울의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장”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재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 서울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서울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서울시장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서울시장은 문화재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서울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서울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서울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서울시장은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문화재의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문화재 보존과 가치확산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재지킴이를 서울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제2조)
- 나.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에 관한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제3조)
- 다.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 라.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 마.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6조)
- 바.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 사.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 아. 문화재지킴이 포상 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52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는 다자녀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에 머물러 있어, 지원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상상나라 입장료 감면대상을 두자녀 가족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입장료 감면 대상을 “세자녀 이상” 에서 두 자녀 이상 가족에게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으로 정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함(제6조제1항제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653호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는 다자녀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에 머물러 있어, 지원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제대혈 비용 면제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3자녀→2자녀)함(제9조제1항제2호 마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8654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는 다자녀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에 머물러 있어, 지원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용료 감면 대상을 “세자녀 이상” 에서 두 자녀 이상 가족에게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으로 정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함(제4조제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65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의 호번호를 각각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는 다자녀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에 머물러 있어, 지원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두 자녀로 조정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3자녀→2자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하수도 사용료의 20% 감면 규정 신설(제34조제1항제10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656호**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노동자복지관의 시설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노동자복지관 사무실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료 등) 시장은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및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고, 이용료는 별표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이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사용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
- ②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서울특별시의 행사 또는 노동자복지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명 칭	시설명	기본 이용시간	금액(원)	비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강당	2시간	80,000 ~ 150,000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 음향 기본 장비 필요 시 제공 1회의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2 시간 미만 이용은 기본 이용시간 이용으로 간주함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금액을 시간당 단가로 추가 징수함
	소강당	2시간	60,000 ~ 120,000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강당	2시간	80,000 ~ 150,000	
	회의실	2시간	40,000 ~ 80,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사용계약 또는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및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수탁협약이 체결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노동자복지관이 노동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사무실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와 이용료 징수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별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이용료 범위를 규정한 별표를 추가함(제8조 및 별표2).

나.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제9조).

다.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사용료와 이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57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청년 일자리”를 “청년일자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람중”을 “사람중”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장체험 기회 제공
2. 취업 교육 및 정보 제공
3.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4.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5. 취업 알선
6.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및 운영
7. 청년의 참여 유도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청년일자리 창출”을 “제7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으로 청년 고용 정책의 불안전성이 매우 증가한바, 청년 고용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1호~제8호의 신설).

나. 조문 신설에 따른 현행 조문의 이동(제8조~제13조)

다. 제7조의 신설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인용함(제12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658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2명”을 “2명(다만, 주민대표가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제 추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주민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민협의회 주민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전문가를 추천할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제16조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659호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8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하되,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이상 심의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호”를 “법 제32조제3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시행령 제36조제8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된 다수인관련민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되어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7명”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 단서에 의한 민원업무 소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에는 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되지 아니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 4명 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행정안전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수인관련민원 등의 재심의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제2조제1항).

나. 다수인관련민원 등의 재심의 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함(제3조제1항).

다.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제6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660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의 호번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 자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명을 수정하는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화재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주택 등을 추가하여 서울시 화재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인용법명을 수정함(제1조).

나.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다문화 가족 거주 주택, 지하층 주택,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에 위치한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함(제3조제1항제5호~제8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661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구성 및 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 을 “구성”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
9. 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

제3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으로 한다.

10.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 앞에 “제5장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시민참여·소통강화, 지원 등” 을 삭제한다.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설치기준의 마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설비
2.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설비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할 때는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에 따른 시장의 허가 대상시설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 등은 해당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설비의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시민참여·소통강화, 지원 등

제24조(중전의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시, 자치구 및 에너지공동체 등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중전의 제24조)제2항 중 “효율화”를 “효율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로, “자를”을 “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중전의 제28조)제1항 중 “효율화와”를 “효율화,”로, “확대를”을 “확대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로, “행정 및 재정상”을 “행정·재정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효율화와”를 “효율화,”로,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기”를 “개발·이용·보급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확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발굴 및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해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효율적 조례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유사 조례를 일원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구성을 기본이념에 추가함(제2조).
- 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를 정의함(제3조).
- 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설치기준 마련을 규정함(제18조).
- 라.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함(제2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62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의 “청와대소방대장” 을 “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기존의 ‘청와대소방대’의 명칭이 ‘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변경되어 소방관서장의 대상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내의 하부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2022.11.30.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직속기관으로 편제·신설됨에 따라 소방관서장에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관서장의 범위 중 청와대소방대장을 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을 추가함(제3조제2항제3~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663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청와대소방대”를 “서울시민안전체험관, 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기존의 ‘청와대소방대’가 ‘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관서 용어 정의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소방재단본부 안전지원과 내의 하부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2022.11.30.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직속기관으로 편제·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관서의 용어 정의 정비(제2조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664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장은” 부분을 “① 시장은” 으로 한다.

제8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신규입주 및 전입이 이루어지는 즉시 대피로와 소방용품 및 소화설비에 관한 위치와 사용법 안내
2.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의 개폐장치가 수동개폐장치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 개폐장치로의 변경 설치(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 출입문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필요한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신규입주 및 전입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로와 소방용품·설비에 관한 위치 및 사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옥상 출입문 개폐장치가 수동인 경우 비상문자동개폐장치로의 변경 설치를 권고할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신규입주 및 전입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대피로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옥상 출입문을 비상문자동개폐장치로의 변경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

나.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665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의2를 제7조의2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이하 “서울브랜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대학에서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광고·마케팅·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

③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브랜드 구조 체계화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

2. 시 산하기관의 브랜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3. 시 브랜드 정책 관련 전문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⑤ 시장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 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에게 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서울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와 시 산하기관의 각종 브랜드를 관리·조정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서울브랜드총괄관) 위촉과 업무범위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및 임기규정을 신설함(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나. 민간전문가의 역할, 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8666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지원) 제1항 중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를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 밖의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제18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667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를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및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 디자인산업담당관 신설로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을 다각화 하여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디자인재단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기존 서울디자인지원센터와 유기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호).

나.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 사업으로 명시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제4조제4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668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상생협약 체결 지원)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리 노동자와 주택관리업자등 간의 상생협약 체결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시장은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민주거의 주요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직원,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노동자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 기본계획에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제6조제1항제5호)
- 나. 관리노동자와 주택관리업자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함(제9조)
- 다.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시책 활성화를 위해 표창규정을 신설함(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69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같은 조 중 제1항의 항번호를 삭제하고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 안전취약계층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
2.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
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5.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빈도와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재난은 예측이 어려워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이므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상 안전취약계층 관련 포함사항을 규정(제49조제2항).

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제57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670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 “공공시설물”을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와 제4호를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6조 가이드라인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심의를 신청한 자는 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견이 반영된 최종 디자인을 심의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심의 이후 사업 추진 등의 과정에서 최종 디자인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과 우수사례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별표 1¹⁾]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²⁾(제8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파. 지하보도 및 지하도상가 등 출입구(캐노피 포함) 하. 지상 노출 엘리베이터
도시 철도 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서울시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 시설물	가. 육갑문, 나들목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가.삭제
자전거 이용시설	가. 공공자전거, 자전거보관대, 안내시설, 킥보드(전동형 포함) 및 거처대 등

2. 그 밖의 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CCTV, 통신안테나 가림시설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정보통신망	가. 삭제 나. 삭제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삭제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정류장, 정류소 포함) 다. 삭제 라. 교통시설 안내표지판(지하철,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택시, 그 밖의 유사한 것) 마.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진·출입표지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삭제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볼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쉼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관용차 등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유선장, 도선장 그 밖의 유사한 것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마. 전기차,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정거장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바. 가로 영상문화시설, 미디어폴, 정류장·스마트 쉼터 복합 미디어 시설 등 미디어 콘텐츠 시설물 사. 친환경 차량 충전시스템 기기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각이미지 나. 픽토그램, 서체, 색 등
미디어콘텐츠	가. 미디어 콘텐츠

- 1)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 2) 단,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디자인의 범위에 공공공간을 포함함(제2조제1호, 제3호)
- 나.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및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제8조제2항)
- 다.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비함(제21조제6항 및 제7항)
- 라. 시장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규정함(제29조)
- 마.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을 개정함(별표 1)

◆ 서울특별시조례 제867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산업부지 확보비용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의 공동주택 건축 허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용이 포함되어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15. 7. 30.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개정하였으나,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음.
- 이에 따른 조례 적용 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정규정의 시행(2015. 7. 30.) 전 결정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15. 7. 30.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981호)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함.
- 나. 조례의 시행(2015. 7. 30.)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포함하여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적용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672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주택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와 각계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기구인 주택정책자문단을 설치·운영하여 경제·사회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주택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복잡한 제도·사업의 통합 및 개선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정책자문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 신설(제9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8673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2021.1.7.) 후 1차례 개정(2022.4.28.)되었으나 개정과정에서 인용 조문번호와 용어가 일부 오기되어 조례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잘못 인용된 조문번호를 정비함(제2조 및 제7조)

나.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비함(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74호**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 중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체활동 활성화 중합”을 “신체활동장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민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체활동 활성화”를 “신체활동장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각각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체활동 활성화”를 “신체활동장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연도별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 수립)”을 “(연도별 신체활동장려 실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을 “신체활동장려 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체활동활성화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활성화하기”를 “장려하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등)” 을 “(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성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체활동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 를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신체활동장려위원회”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신체활동 활성화” 를 각각 “신체활동장려” 로 하고, 같은 조 하단에 위치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3조로 하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신체활동장려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홍보 및 캠페인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
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4. 신체활동장려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관련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을 “(신체활동장려사업 지원단)” 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을 각각 “신체활동장려사업” 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 중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을 “신체활동장려사업” 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 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원활한 수행” 으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 중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을 “신체활동장려사업”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신체활동 장려 사업에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범위에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화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 신체활동 홍보·캠페인을 보강하며,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하고 “활성화” 용어를 “장려”로 수정함(제2조~제14조)

나.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사업의 추진을 규정함(제8조)

다. 신체활동장려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제9조)

라.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대상을 규정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7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지원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지원 및 반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2.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 비용, 반환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제2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공사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총회의 의결 요건에 관한 사항

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제2항 본문 중 “구성하며,”를 “구성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위원장 1명(제2호에 따른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호에 따른 전문가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3. 사업시행자
4.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5.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

6. 법 제74조제4항, 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를 “제3항제3호에서 제7호” 로, “참석한다” 를 “참석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 조정한다” 를 “협의·조정한다” 로 한다.

제7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5조제9호 중 “조합 해산” 을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 해산” 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본문 중 “사업시행계획인가” 를 “조합설립인가” 로, “총회에서” 를 “조합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 을 “제6항” 으로 한다.

제86조제4호 중 “조합 해산” 을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 해산” 으로 한다.

조례 제858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의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시행 후 안전진단 실시 시기가 도래하거나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사 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하도록 함.
- 시공자 선정 시기와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
- 조합 해산 및 협의체 구성 관련 상위법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협의체 참석자를 회의 구성원에 포함하는 등 협의체 규모를 확대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하도록 함(제9조제5항 신설).
- 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및 반환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 후 안전진단 실시 시기가 도래하거나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신설).
- 다. 협의체 운영과 조합 해산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협의체 구성원에 분쟁 당사자를 포함하도록 함(제67조).
- 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자를 선정함(제77조).
- 마.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함(부칙 제1조 및 제3조 신설).
- 바. 조례 제858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의 단서를 삭제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676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6. 영 제8조의2의 3, 4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제34조제2항 중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시 도시재생위원회”를 “시 도시재생위원회”로,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를 “완화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6. 영 제8조의2의 3, 4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으로 인해 획일적이고 일률적 층수의 건축물이 계획되어 주거지 경관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물 층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건축물 계획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거지 경관 및 도시미관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반지하, 빈집 등 노후·불량건축물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하도록 함(제34조제3항 삭제, 제34조제2항)
- 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제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677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2항에 따른 공개 및 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통폐합을 하는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내역과 그 사유
2. 통폐합으로 인한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등의 변동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3.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4.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추천자는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통폐합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등 통폐합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의 특례) 제8조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기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천기한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으로 위원 추천 지연과 임원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시에만 타당성 검토와 검토 결과 공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현행 법령에서 포함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통폐합 추진 시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 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기한을 규정하고, 통폐합 시에도 타당성 검토와 결과의 공개, 주민의견 수렴 등 설립 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들을 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시, 타당성 검토 및 결과의 공개와 검토 결과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등 설립 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들을 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함(제5조의2 신설).
-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자는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함(제8조제6항 신설).
- 다.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특례조항을 규정함(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678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 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 것” 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1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2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는 제2항에 따른 각종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시민의 책무)” 를 “(시민·사업자의 책무)”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 을 “법 제67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해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축목표 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제8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9.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제9조제3항 중 “거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제10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례 등의 내용을 국가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조례의 입법예고 시작일부터 3일 이내
2.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 ③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를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전”을 “학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두”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또는 임시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⑩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중 “관계”를 “법 제24조 및 관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녹색건축물의 확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활성화”를 “확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을 “확대를 위하여 제2항”으로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제도 및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
2.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도심 자동차 운행 제한
3.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4.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5. 자동차 저공해 사업지원

제20조제1항 중 “작성”을 “축적·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기후위기 적응 사업”을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한다.

제5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영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중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를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실천연대”를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는 소속 공무원 파

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후환경본부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제출
3.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제도 신설과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축소하며, 온실가스 감축 시책과 지역사회 이행·확산과 관련하여 시장의 의무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제2조).

나. 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의2 신설).

다. 위원장 체제 및 위원 수를 변경하고 연임규정을 축소함(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6항).

라. 녹색건축물 확대 및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16조 및 제17조).

마.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28조 ~ 제30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679호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도시·농촌 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에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에 대하여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취소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9조(치유농업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에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제6호에 따라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정부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자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3.24.)·시행(2021.3.25.)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그러나 서울시는 치유농업에 관한 별도의 조례 없이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에 치유농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만을 두고 있음.
- 이에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치유농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제3조).
- 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제4조~제5조).
- 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제6조).
- 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해 규정함(제7조~제8조).
- 마. 치유농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제9조).
- 바.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사.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80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장하여” 를 “보장·확대하여” 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 를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중 “문화예술인” 을 “문화예술인, 학교예술강사” 로, “학교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을 “문화예술교육” 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장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시책 강구 방안을 넘어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들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사회적 배려 대상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함 (제5조제3항).
-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다. 학교예술강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제11조제3항).
- 라.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규정함(제14조).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885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실·본부·국
조례안 (6건)	1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3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4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5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동의안(16건)	1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3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4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실·본부·국
	5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6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7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8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9	시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0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1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12	서울광역시[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13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1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15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차 위탁 동의안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16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의견 청취안 (2건)	1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경제정책실 (바이오AI산업과)
	2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9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2023. 7. 1.자 조직개편을 위한 실·국별 분장사무 조정

2. 주요내용

- 가. 기획조정실 분장사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및 ‘행정정보화 기획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7조)
- 나. 교육정책국 분장사무 중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교육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안 제8조)
- 다. 교육행정국 분장사무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라. 학교보건진흥원을 ‘보건안전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6절, 제21조~제23조)
- 마. 신청사 건립 전담기구의 존속기간을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전화 02-399-9356, FAX 02-6973-9921

○ 이메일: kalismahan@sen.go.kr

4.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및 제14호를 삭제하고, 제8조제5호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교육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한다.

제9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제6절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으로,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의 “학교보건진흥원”을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수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제10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7조(기획조정실) (생략)	제7조(기획조정실) (현행과 같음)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u> <u>에 관한 사항</u>	10. <u>삭제</u>	업무 이관
11. ~ 13. (생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u>행정정보화 기획에 관한 사항</u>	14. <u>삭제</u>	업무 이관
제8조(교육정책국) (생략)	제8조(교육정책국)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교육정보화 <u>및 행정정보화</u> 에 관한 사항	업무 통합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행정국) (생략)	제9조(교육행정국) (현행과 같음)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u>10.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u>	업무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제6절 서울특별시교육청 <u>학교보건진흥원</u>	제6절 서울특별시교육청 <u>보건안전진흥원</u>	명칭 변경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u>학교보건진흥원</u> (이하 “ <u>학교보건진흥원</u> ” 이라 한다) 을 둔다.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u>보건안전진흥원</u> (이하 “ <u>보건안전진흥원</u> ” 이라 한다) 을 둔다.	명칭 변경
② <u>학교보건진흥원</u> 은 서울특별시 - - - - - .	② <u>보건안전진흥원</u> 은 서울특별시 - - - - - .	명칭 변경
제22조(원장) <u>학교보건진흥원</u> 에 원장을 두고 - - - - - - - - - - .	제22조(원장) <u>보건안전진흥원</u> 에 원장을 두고 - - - - - - - - - - .	명칭 변경
제23조(업무) <u>학교보건진흥원</u>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3조(업무) <u>보건안전진흥원</u>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91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2023. 7. 1.자 조직개편을 위한 일반직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일반직 정원 조정: 총계 변동 없음
 - 4·5급 정원 감원: 감 2명 (9명 → 7명)
 - 교육지원청 4·5급 정원 감원: 감 2명 (2명 → 0명)
 - 4급 정원 증원: 증 2명 (40명 → 42명)
 - 본청(직속기관 포함) 4급 정원 증원: 증 2명 (29명 → 31명)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전화 02-399-9356, FAX 02-6973-9921

○ 이메일: kalismahan@sen.go.kr

4.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722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25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2		31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42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588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37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7,722					총 계	7,722				
정무직 계	1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25					일반직 계	7,125				
2·3급	1		1			2·3급	1		1		
3급	9		9			3급	9		9		
3·4급	3		3			3·4급	3		3		
4급	40		29	11		4급	42		31	11	
4·5급	9		7	2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42					5급 이하 소계	7,042				
전문경력관 소계	7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588					특정직 계	588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37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37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